

『유가론기』의 신라인법사(新羅因法師)와 신라국법사(新羅國法師) 연구*

박인석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parinn@hanmail.net

- I. 들어가며
- II. 판본 대조 및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
- III. 『유가론기』에 인용된 신라인법사
(=국법사)의 주석 내용 분석
- IV. 맺음말

요약문

『유가론기』의 2종 판본 중 신수대장정에 수록된 판본에 따르면 ‘新羅○法師’의 형식으로 나오는 신라출신 불교학자는 총 8인이지만, 금장(金藏)에 수록된 판본에는 앞의 8인 중 ‘국법사(國法師)’가 나오지 않으므로 총 7인이 된다. 2종 판본을 비교해보면 이런 혼란은 신라인법사(新羅因法師)와 신라국법사(新羅國法師)에게서 발생한다. 이들의 인용횟수는 총 3회로서, 그 빈도수는 낮은 편이지만, 그간 잊혔던 신라출신의 불교학자의 정체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와 목록 등을 검토해보면, 현재로서는 신라출신의 불교학자 가운데 국법사는 발견되지 않고, 금장본에서도 국법사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발견한 ‘인법사’의 『무량수경』 주석 5곳, 『성유식론』 주석 1곳이 본고에서 다루는 신라인법사의 주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유가론기』 2종 판본에 나오는 인법사와 국법사의 2인이 실제로는 인법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245).

사1인일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주석 내용 3회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유가론』에 나오는 총 3회의 주석은 모두 『유가론』 본문에 대한 직접적 주석이라기보다는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한 참고할만한 해석으로 인용되고 있다. 둘째 『유가론기』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다뤄지던 보살의 2종류, 즉 ‘일생소계(一生所繫)’와 ‘주최후유(住最後有)’에 대한 주석이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를 제기한 인물이 신수본의 국법사가 아니라 금장본에 나온 인법사1인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둔륜이 인법사의 주석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기존의 『유가론』의 주석서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식학자들의 다양한 저술 가운데서 『유가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모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법사의 활동 시기 등을 추정해보면, 원측, 규기보다는 후대에 활동했고, 둔륜이 『유가론기』를 작성하던 705년 이전에 저술을 남긴 신라 출신 유식학자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둔륜(通倫 혹은 道倫), 『유가론기(瑜伽論記)』, 금장(金藏), 신라인법사(新羅因法師), 신라국법사(新羅國法師)

I. 들어가며

둔륜(通倫, 혹은 道倫)이 집찬(集撰)한 『유가론기(瑜伽論記)』에 유독 신라 출신 승려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목된 사실이다. 둔륜은 『유가론기』 가운데 몇 사람에게 대해 ‘新羅○法師’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여, 인용된 승려들이 신라 출신임을 명기해주고 있다. 일본에 전래되어 1733년(享保18)에 판각된 『유가론기』 24권본(이하 신수본 『유가론기』)에 의거하여 이 문헌을 연구했던 인물 가운데 에다 도시오(江田俊雄, 1934)는 ‘新羅○法師’의 형식으로 표기된 인물로 6인, 곧 ‘元曉·玄·興·因·國·昉’이 있다고 제시하였다.¹⁾ 이후 가츠마타 순교(勝又俊教, 1938)는 국역일체경에 들어가 있는 『유가

1) 江田俊雄, 「新羅の通倫と『論記』所引の唐代諸家」, 『宗教研究』新11卷3號, 1934, pp.87-100. 이 논문은 通倫의 이름, 고향, 저서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둔륜의 생애에 대

론기』의 일역 작업 과정에서 인용되는 논사들을 일일이 표시하여 최종적으로 『유가론기』에 인용되는 논사들의 인용횟수를 밝혔는데, 앞서 에다 도시오가 제시한 6명에서 2명을 추가하여 총 8인이 ‘新羅○法師’의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밝혔다.²⁾ 추가된 2인은 ‘證·窟’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본에 전래된 『유가론기』에 나오는 ‘新羅○法師’에 포함되는 8인은 ‘元曉·玄·興·因·國·昉·證·窟’이다.³⁾

한편 1934년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서 1178년 금조(金朝)에 바쳐진 대장경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유가론기』(이하 금장본 『유가론기』)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20권본으로 된 이 책의 1권 말미에 1122년에 작성된 이욱(李燾)의 간기가 있는데, 여기에 ‘海東興輪寺沙門倫師’라는 구절이 있어 고래로 논란이 되었던 『유가론기』의 편찬자가 신라 출신임을 확증해주었다. 다만 이 문헌에서 『유가론기』 편찬자의 이름을 도륜(道倫)이라고 한 점은 일본의 판본과 다른 점이다. 이 문헌은 1122년 판각된 것을 복각한 것으로, 현재 20권 가운데 3, 4, 8, 13, 14, 15, 18권이 결락되어 있다. 그러나 결락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판본과 많은 부분을 대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新羅○法師’로 표기된 8인의 불교학자 가운데, 신라인법사(新羅因法師)와 신라국법사(新羅國法師)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합쳐서 3회 밖에 인용되지 않지만, 신수본과 금장본 『유가론기』를 대조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에 전래된 신수본 『유가론기』에서는 신라인

해 650-710년 혹은 720년으로 추정하였다.

- 2) 勝又俊教, 「『瑜伽論記』に關する二三の問題」, 『佛教研究』, 1938, pp.122-141. 이 논문은 『유가론기』의 찬집 연대를 705년에서 수년 이후로 한정시켰고, 신수본 『유가론기』에 등장하는 논사 37인의 인용횟수를 일일이 제시해주고 있다.
- 3) 『유가론기』에 나타난 이 8인의 신라 논사 가운데 최근 ‘新羅玄法師’에 대한 연구 성과가 1편 나왔다. 백진순,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신라인법사(新羅玄法師)에 대한 연구: 「섭결택분」의 성문지·보살지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52(불교학연구회), 2017, pp.111-140.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16회 인용되는 것을 알려졌던 현법사의 인용횟수를 3회 더 추가 발견하였고, 단론이 인용하는 여러 논사들의 인용패턴을 분석한 뒤, 「섭결택분」에 나오는 현사의 주석을 통해 그가 신역경론에 의해 확립된 신유식설에 정통한 유식학자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법사(新羅因法師)가 1회, 신라국법사(新羅國法師)가 2회 인용되는 반면, 금장본 『유가론기』에서는 신라인법사만 2회 인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부분을 서로 대조해볼 경우, 첫째 신수본 권11과 금장본 권9에는 모두 동일하게 ‘신라인법사’라고 표기하고, 그의 주석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 신수본 권16에 수록된 ‘신라국법사’는 금장본에는 결락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동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신수본 권23에 수록된 ‘신라국법사’는 금장본 권20에서는 ‘신라인법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후 맥락과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판본에서 법사의 이름을 다르게 판각해두고 있다. 한편 금장본 『유가론기』에 따르면, ‘신라국법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간 신수본에 의거하여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는 다른 인물이지만, 금장본에 의거한다면 두 사람이 실제로는 동일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가론기』에 인용된 두 법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특히 신수본 『유가론기』에 인용된 ‘국’법사는 실제로 ‘인’법사를 가리킨다는 가정 하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인(因)’과 ‘국(國 혹은 国)’의 두 글자가 필사 과정에서 혼동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판본 대조 및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해봄으로써 ‘국’을 ‘인’의 오기로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유가론기』의 두 판본에서 총 3회 등장하는 이들의 주석 내용을 통합하여 분석해봄으로써 ‘인’ 혹은 ‘국’으로 명명된 신라출신 유식학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다.

II. 판본 대조 및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

1. 『유가론기』의 판본에 따른 2인의 인용 비교

현존하는 『유가론기』의 판본은 2종이다. 첫째는 일본에 전래되어 1733년에

판각된 것으로 현재 대정신수대장경 제42책에 수록되어 있다. 둘째는 1934년 중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1122년의 간기가 있는 판본으로 현재 『송장유진(宋藏遺珍)』(1935년), 『적사대장경(積砂大藏經)』(1980년), 『조성금장(趙城金藏)』(2008년) 등 20세기 이후 새로 간행된 장경들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금릉각정처(金陵刻經處)에서 간행된 『유가사지론기』는 위의 두 가지 가운데 첫째 판본을 교정하여 1922년 처음 간행되었고, 이후 둘째 판본이 발견된 1934년 이후 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교정되어 간행되었으므로, 위의 두 가지와 다른 새로운 판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에 전래된 『유가론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성립되었는가. 이에 대한 단서는 그리 많지 않은데, 가장 오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바로 금장본 『유가론기』에 나오는 1122년 작성된 이욱(李燾)의 간기이다. 이 글에 따르면 『유가론기』는 중국의 진정(眞定) 각산(覺山)에 있었는데, 고려의 의천(義天, 1055-1101)이 입송했던 시기(1085-86)에 이 책의 초본(草本)을 얻었다고 한다. 현재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瑜伽論]疏二十四卷 遁倫述”(T55, 1176b13)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쓰카모토 젠류(塚本善隆, 1936)는 일본에 전래된 『유가론기』 판본이 의천이 수집한 문헌에 근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의천이 전하는 『유가론기』의 권수와 신수본 『유가론기』의 권수가 모두 24권이고, 편자 역시 양자 모두 ‘둔륜(遁倫)’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욱의 글에 따르면, 의천이 『유가론기』의 초본을 얻은 이후, 이 책은 진정(眞定) 용흥사(龍興寺)의 사자사문(賜紫沙門) 천공법사(千公法師), 곧 수천법사(守千法師, 1064-1127 또는 1143)에 의해 1121년(宣和 3) 12월 1일부터 대략 1개월 가량 교감된 뒤, 1122년에 판각되었다. 그러므로 금장본 『유가론기』가 20권본이 된 것은 의천이 얻었던 초본을 수천법사가 교감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

4) 塚本善隆, 「金刻大藏經の發見とその刊行」, 『日華佛教研究會年報』 v.1, 1936.

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 전래된 『유가론기』는 성위(性威)에 의해 교감이 진행된 뒤 1733년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다. 성위의 발문을 보면, 그는 이 책을 간절히 구하던 종이 책 1부를 베껴 써서 소장하게 되었는데, 글자의 와천(訛舛)이 많았다고 한다. 이후 자심장본(慈心藏本)을 얻어 세 번 교감한 뒤 목판에 새겼다고 한다.⁵⁾ 이렇게 본다면 현존하는 『유가론기』의 2종 판본은 모두 의천이 송에 들어가 불전을 구할 때 얻은 초본(草本)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에 교감자의 작업에 따라 각각 20권본 및 24권본으로 정비된 뒤 목판에 새겨졌다고 볼 수 있다.⁶⁾

이상과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의 인용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유가론기』 2종 판본에 따른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의 인용 부분

	瑜伽師地論 100卷	金藏本(20卷本) : 新羅因法師 2回 新羅國法師 없음	新修本(24卷本) : 新羅因法師 1回 新羅國法師 2回
1	第46卷 本地分·菩薩地	第9卷(宋藏遺珍 第5卷 p.3264 下): 新羅因法師	第11卷下(T42, 561c): 新羅因法師
2	第57卷 攝決擇分·五識身相應地意地	缺落	第16卷上(T42, 667a): 新羅國法師
3	第91卷 攝事分·契經事處擇攝	第20卷(宋藏遺珍 第5卷 p.3485 下): 新羅因法師	第23卷下(T42, 843b): 新羅國法師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인용은 『유가사지론』 「본지분」의 ‘보살지’에 대한 주석으로, 2본 모두 분명히 ‘신라인법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체자의 차이만 있을 뿐 전후의 인용 맥락과 글자,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두 번째 인용은 「섭결택분」의 ‘오식신상응지의지’에 대한 주석으로, 금장본에는 이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곳은 신수본에 ‘신라국법사’로 명기되어 있다. 세 번째 인용이 바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위 문장의 내용분석은

5) 『瑜伽論記』卷24, 性威, 「跋瑜伽論記後」(『大正藏』42, pp.868上中).

6) 이상의 『유가론기』에 대한 서지 사항은 박인석, 「『유가론기(瑜伽論記)』의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思想史學』50(韓國思想史學會), 2015. 참조.

다음 장에 미루고, 여기서는 2종 판본에서 차이나는 부분만 확인하고자 한다. 두 판본의 해당부분을 인용해보자.

新羅因法師云, “以此文知, 菩薩於未出家已前得初靜慮, 出家已後自然得戒, 乃至證非想定. 即先得定, 後得戒也.”(金藏本. 宋藏遺珍 第5卷, 3485下)

新羅國法師云, “以此文知, 菩薩出未出家已前得初靜慮, 出家已後自然得戒, 乃至證非想定. 即先得定, 後得戒也.”(新修本. T42, 843b)

이는 「섭사분」의 「계경사처택섭(契經事處擇攝)」에 대한 주석으로, 인용부분을 보면 ‘因’과 ‘國’, 그리고 ‘於’와 ‘出’의 두 곳에서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 인용 맥락과 논의되는 맥락은 동일하다. 2본에서 차이가 나는 곳은, 첫째는 법명 가운데 ‘因’과 ‘國’이고, 둘째는 ‘於’와 ‘出’이다. 이 가운데 둘째 내용은 이 주석 내용이 『유가사지론』 권91 「섭사분」의 “又彼即於未出家位, 居瞻部影, 獨坐思惟, 便能證入最初靜慮, …”(T30, 820a)에 대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문맥상 금장본의 ‘於’가 적절하다. 신수본의 ‘出’은 문장의 구조상 매우 어색하고, 『유가사지론』 본문에도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명에 나오는 ‘因’과 ‘國’은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주석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언한 인물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신수본에 의거한다면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는 그간 의문의 제기가 없었듯이 서로 다른 인물로 볼 수 있다. 둘째 금장본에 의거한다면, 신라국법사의 ‘國’은 ‘因’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상의 판본의 대조 결과에 따르면, ‘인’과 ‘국’이라는 법명과 관련하여 신수본과 금장본 중 어느 쪽에 의거할 것인가는 학자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금장본에 의거해서 ‘국법사’가 ‘인법사’의 오기는 아닌가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

지다. 하나는, 2종 판본의 해당 부분에 국한해서 보면, 금장본이 신수본에 비해 보다 정확함을 알 수 있고, 이와 대비해볼 때 신수본의 전승과 교감, 그리고 판각 과정에서 ‘인’을 ‘국’으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신라인법사’에 대해서는 목록 등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신라국법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2. 목록과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

『유가론기』에 대한 연구는 1934년 중국에서 금장본이 발견된 시점을 전후로 특히 일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유가론기』 전반에 대해 매우 종합적이고 개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이다.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에 대해서는 1938년 일본의 가츠마타 순교(勝又俊教, 1938)가 짧게 언급한 이후 후속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1976)에서 이러한 성과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라 법사 2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다음 본고에서 새로 찾은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츠마타(1938)가 확인한 신라 법사 2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라인법사(新羅因法師)는 오직 1회 인용되었고, 전체 이름과 경력은 모두 분명하지 않다. 『동역록』에는 『해심밀경소』의 저자 영인(令因)이 있고, 『의천록』에는 『백법론강요약석』 1권의 저자 지인(智因), 『구사론초』 2권의 저자 운인(雲因)의 이름이 보이는데, 지인(智因)인지, 영인(令因)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결정하기 어렵다.

신라국법사(新羅國法師)는 2회 인용되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⁷⁾

7) 勝又俊教, 앞의 논문, pp.132-133.

가즈마타에 따르면, 신라인법사에 대해 일본 영초(永超, 1014-?)의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1094, 이하 『동역록』)과 고려 의천(義天, 1055-1101)의 『신편제종교장총록』(1090, 이하 『의천록』)에서 ‘인(因)’으로 범명이 끝나는 인물을 찾아 영인(令因), 지인(智因), 운인(雲因)의 3인 중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 중 누구인지 확정하지는 못하였다. 또 신라국법사는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에서는 ‘신라인법사’에 대해 영인(靈因)으로 표기한 뒤, 영인(令因), 운인(雲因)을 같은 인물로 보았으며, 위의 가즈마타가 언급했던 인물 중 지인(智人)을 제외하였다.⁸⁾ 또한 신라인법사의 저서로는 『해심밀경소』(令因), 『구사론초』(雲因 혹은 靈因), 『무량수경소』(因法師)의 3종을 거론하였고, 마지막 부분에서 “本疏 뿐 아니라 靈(令)因의 撰述로 되어 있는 以上 諸書가 모두 新羅 因法師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바도 아니며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⁹⁾라고 하여 신라인법사 및 그의 저술에 대해 확정할 근거가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여기서는 지인(智因)을 제외한 대신 가즈마타가 기재하지 않은 『동역전등목록』의 ‘인법사의 『무량수경소』’를 더 언급하는 점이 주목된다.

‘신라인법사’와 관련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이들이 주목한 문헌은 바로 신수본 『유가론기』(1회)이다. 가즈마타는 신라 출신의 ‘인법사’를 찾기 위해 여러 목록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로 영인(令因)·지인(智因)·운인(雲因)의 3인과 그들의 저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에서는 가즈마타가 제시한 3인 중 지인을 제외하고, 영인(令因)·운인(雲因), 그리고 영인(靈因)을 동일인으로 간주한 뒤 그들의 저술을 제시하였지만, 이들 모두 ‘신라인법사’의 정체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상의 2종의 연구들은 모두 신수본에만 의거해서 ‘인’과 ‘국’을 서로 다른 두 명의 학자라고 전제한 것이라

8) 지인을 제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글자의 모양과 발음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운인(雲因)과 영인(靈因), 영인(令因)과 영인(靈因)을 동일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p.50.

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본고에서 신라인법사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본 결과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두 가지 더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신라 현일(玄一)의 『무량수경기(無量壽經記)』(X22)에 ‘인법사(因法師)’가 5회 인용되는 점이다.¹⁰⁾ 현일이 인용하는 인법사는 『동역록』(T55, 1150c16)의 “[無量壽經] 同疏一卷(因法師)”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둘째는 저자 미상으로 12-3세기 일본에서 나온 『성유식론』의 주석서인 『성유식론본문초(成唯識論本文抄)』에 ‘신라인법사’의 견해가 1회 인용되는 점이다. 그 내용은 “新羅因法師記云, 若約下第八卷心王心所互相緣義, 亦可帶質.”¹¹⁾이다. 『성유식론본문초』는 『성유식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가의 주석을 나열하는 책으로¹²⁾, 『성유식론』의 여러 주석 가운데 신라인법사가 제시한 견해는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증거만으로 ‘신라인법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현일의 『무량수경기』에서 ‘인법사’라고 칭한 인물, 『동역록』에 『무량수경소』의 저자로 기록된 ‘인법사’, 그리고 『유가론기』에 인용된 ‘신라인법사’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의 저술들 중에는 적어도 『무량수경』의 주석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유식론본문초』에 나오는 ‘신라인법사’ 역시 『유가론기』에 나온 ‘신라인법사’와 동일인일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성유식론』이 한역(659년)된 이후 당과 신라의 많은 불교학자들이 이 문헌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마찬가지로 신라인법사 역시 『성유식론』의 연

10) 玄一의 『無量壽經記』(『大正藏經』22)에는 ‘因法師’가 5회 인용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p.60中7), “因法師云, 約實而論亦有勝劣. 然其狀相似故, 說無好醜.” ②(p.63中20), “然因法師會小八別二說. 一云實小字而言, 八者是謬. 何以故? 此經及小經皆云十劫故. 一云實十八. 然小經中十者, 約大數可.” ③(p.66上2), “因法師云, 清淨是四塵之通德所攝, 別色處攝.” ④(p.66中24), “因法師云, 見色益身, 是獨食所攝. 以見色時獨能復受喜樂故.” ⑤(p.67上16), “因法師二說, 一云約實大別. 就對餘人殊勝故, 不能別見耳. 一云亦有輪王與天王無別, 如頂生王.” 이상의 5가지 부분은 『무량수경』 경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주석에 해당한다.

11) 『成唯識論本文抄』卷33(『大正藏』65, p.679下20-21).

12) 『佛書解說大辭典』, pp.32-33.

구에 정통한 학자였을 것이라 추정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목록들에 그에 대한 주석서가 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성유식론본문초』에 인용된 횃수도 1회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인법사에게 『성유식론』 관련 저술이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가 『성유식론』의 연구에 깊이 관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 가운데 『동역록』에 나온 ‘『해심밀경소』의 저자 영인(令因)’과의 연관성 역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령 『유가론기』에 처음 인용된 ‘신라인법사’의 주석 내용은 ‘일생소계’ 및 그것의 사례로 제시된 ‘미륵삼생설’에 대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규기의 『대승법원의립장』, 원측의 『해심밀경소』 등에서 상세히 언급되는데, 특히 신라인법사의 견해에서 원측 『해심밀경소』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이것은 ‘인법사’가 ‘영인’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상의 목록에 대한 검토에서 더 나아가 신라인법사에 대해 좀 더 진전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유가론기』의 인용문들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앞질러 말하면, 『유가론기』에 인용된 그의 해석에 의거하면, 그의 활동 시기는 신태, 원측(613-696), 규기(632-685)보다는 후이고, 둔륜(650?-720?)이 『유가론기』 1권을 작성했던 705년 이전에 저술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유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가론』에도 정통한 학자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에 관한 주석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유가론기』에 인용된 신라인법사(=국법사)의 주석 내용 분석

이미 알려져 있듯이, 『유가론기』는 『유가사지론』의 제66권까지 주석한 규기의 『유가사지론약찬』(이하 『약찬』)을 중심에 둔 채, 경(景)·태(泰)·달(達)·삼장(三藏)·측(測)·비(備) 등의 주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200회에서부터

1000회 이상에 이르기까지 인용되고 있으므로, 둔륜이 『유가론기』를 찬집(撰集)함에 있어 이상에서 거론한 논사들을 중심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유가론기』의 2종 판본에서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는 모두 합해서 3회 인용되는데, 『유가론기』와 같은 방대한 주석서에서 3회 인용은 매우 적은 분량이다. 그러나 비록 적은 단서들이긴 해도 이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가령, 둔륜이 당대의 『유가론』 주석가들을 인용할 때 일정한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¹³⁾, 마찬가지로 인법사와 국법사를 인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 첫 번째 인용 : 일생소계(一生所繫)와 미륵삼생설(彌勒三生說)

금장본과 신수본 『유가론기』에서 모두 ‘신라인법사’로 지칭되는 주석은 『유가사지론』 ‘본지분’ 가운데 보살지 제15 ‘초지유가처보살공덕품(初持瑜伽處菩薩功德品)’에 대한 것이다.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론』으로 약칭)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인법사가 주석하고 있는 주제만 소개하는 것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유가론』의 본문에서는 보살의 종류를 10종으로 나누는데, 그 중 아홉 번째가 일생소계(一生所繫)이고, 열 번째가 주최후유(住最後有)이다. 일생소계란 보살의 수행 과정 가운데 ‘한 생애만 계박되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전적으로는 일생보처(一生補處)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¹⁴⁾ 『유가론』(T30, 549a)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 “이번 생애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생애]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할 자(此生無間當證無上正等菩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주최후유’에 대해서는 “이번 생애 머물면서 무상정

13) 백진순, 앞의 논문, p.124. 여기서는 신수본 『유가론기』 24권에 의거하여 둔륜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논사 8인의 인용빈도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8인이란, 基師·景師·泰師·備師·測師·玄師·達師·遠師인데, 이 가운데 基師·景師·泰師는 『유가론기』 전반에 걸쳐 골고루 인용되는 반면, 測師·玄師·達師는 특정 권수에 집중 인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둔륜이 『유가론』을 주석할 때 전자를 주축으로 삼고, 후자를 그들을 보완하는 학자군으로 배치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14) 『佛光大辭典』, p.30下, ‘一生補處’ 참조.

등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자(即住此生能證無上正等菩提)”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개념은 이번 생을 거친 바로 다음 생에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경우와 이번 생에서 곧장 무상보리를 증득하는 경우를 나눈 것이다.

『유가론기』에는 특히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基-測-新羅因法師’ 3인의 주석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基)는 규기(632-682)로서, 주석의 내용은 그가 지은 『대승법원의림장』 권7 「삼신의림(三身義林)」(T45, 365b)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측(測)은 원측(613-696)으로 주석의 인용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상 『해심밀경소』 「서품」에서 두 개념을 비교한 부분을 요약한 것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신라인법사의 주석은 현재로서는 오직 『유가론기』에서만 확인된다. 주석의 분량은 신수본에 따르면, 규기가 12줄, 원측이 5줄, 그리고 인법사가 3줄이다. 이들 3인의 주석은 초점이 조금씩 다른데다 분량도 많기 때문에 규기와 원측의 주석에 대해서는 간략히 요점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유가론기』에 나오는 규기의 주석은 오탈(誤脫)이 있어 『대승법원의림장』과 대조가 필요하다. 규기는 일생소계와 최후유 가운데 일생소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의 사례로 ‘미륵’을 거론한다. 즉 미륵이 성불하기 전 ‘인간세계[人]’에 처한 상태가 일생소계라는 것이 규기의 견해이다. 여기서 규기는 보다 엄밀하게 이 개념을 분석한다. 즉 미륵은 성불하기 전 인간세계에서 죽은 후 장차 성불할 때까지 그 중간에 천(天)의 ①중유(中有)와 ②본유(本有)의 2생(生), 그리고 다시 인간세계의 ③중유와 ④본유의 2생을 포함한 총 사생(四生)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사생(四生)을 거치지만, 이런 과정 전체를 하나로 간주하여 일생(一生)으로 부른다는 것이 규기의 설명이다.

일생소계가 실제로는 네 번의 생[四生]이라는 규기의 설명은 『대지도론』에서 미륵을 삼생(三生)으로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듯 하기 때문에, 규기는 『대지도론』의 삼생(三生)은 ‘미륵이 최후에 인간세계로 와서 성불하는 본유(本有)의 한 생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의 견해를 『대지도론』과 회통시킨다. 참고로 규기의 이런 설명은 당의 지주(智周, 668-723)의 『법화현찬섭석(法華玄

贊攝釋』(X34, 19c), 요(遼)의 전효(詮曉, 926-1011)의 『상생경소회고통금신초(上生經疏會古通今新抄)』(『宋藏遺珍』第6卷, 4175a) 등에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규기는 일생소계와 최후신을 화신·자수용신·타수용신의 경우에 맞춰 분석하는 데 이상의 논의는 그 가운데서 ‘화신’에 입각한 것이다.¹⁵⁾

다음으로 원측의 주석은 일생소계와 최후생을 화신(化身)·실신(實身)의 구도 아래 설명하고 있다. 앞서 규기와 비교하기 위해 화신의 경우만 설명하면, “도사다천(觀史多天=도솔천)에 머무는 것을 일생소계라고 하고, 남섬부주의 몸을 최후생이라 한다.(如住觀史多天, 名爲一生. 贍部州身, 名最後生.)”¹⁶⁾는 것이 원측이 내린 정의이다. 이는 원측의 『해심밀경소』 「서품」에서 일생보처와 최후신을 아주 상세히 설명한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¹⁷⁾ 『유가론기』의 주석에는 없지만, 원측의 주저인 『해심밀경소』에는 앞서 규기가 회통하고자 했던 『대지도론』의 ‘삼생보살’에 대한 논의 역시 언급된다. 원측은, 자신이 정의했던 ‘도솔천에 머무는 것이 일생소계’라고 한 점과 『대지도론』의 삼생보살(三生菩薩)에 대해,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人生)·천생(天生)·최후생(最後生)의 삼생이 정확하지만, 천생이 이 셋을 대표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일생소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규기와 원측 모두 일생소계와 최후생을 삼신(三身) 혹은 이신(二身)의 구도 아래서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대지도론』에서 말한 삼생보살과 자신들의 견해를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규기가 일생소계를 천(天)에 태어나기 이전의 인간세상[人]으로 본 뒤, 실제로는 네 번의 생(生)을 거쳐야 하지만 네 번을 하나의 큰 단위로 보아 일생(一生)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원측은 도솔천에 머무는 것을 일생소계로 파악하여 규기와 같이 본유 및 중유 등으로 생을 파악하는 방

15) 金藏本『瑜伽論記』卷9(『宋藏遺珍』5, 3264中); 新修本『瑜伽論記』卷11下(『大正藏』42, 561下).

16) 앞의 주석과 동일.

17) 圓測, 『解深密經疏』 「序品」(『卍新纂續藏經』21, 202中7-203上17). 원측은 일생보처와 최후신에 대해 각 학파별로 서로 다른 정의를 설명하면서 매우 상세히 이를 설명하고 있다. 백진순, 『해심밀경소 제1서품』(서울: 동국대출판부, 2013), pp.423-431 참조.

식을 택하지 않는 점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있다.

규기와 원측의 주석 다음에 최후로 나오는 신라인법사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신라인법사가 『대지도론』에서 미륵의 삼생을 설한 것을 풀이하였다.
“인간세상에 처음 나고, 천상에 그 다음으로 나고, 다시 인간세상으로 와서 최후로 태어나니, 이것이 삼생이다.”¹⁸⁾

이는 『유가론』 자체에 대한 주석이라기보다는 규기와 원측이 회통하고자 했던 『대지도론』의 미륵삼생설¹⁹⁾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둔륜보다 한 세대 가량 빠른 규기와 원측의 시대에 『대지도론』의 미륵삼생설이 두 주석가의 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볼 때, 이는 당시 불교학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주제의 한 가지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 본다면 신라인법사의 견해는 규기가 ‘천의 중유와 본유, 인의 중유와 본유’의 사생(四生) 가운데 최후의 ‘인의 본유’를 제외한 것을 미륵삼생으로 규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고, 오히려 둔륜이 『유가론기』의 주석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원측의 『해심밀경소』의 견해와 내용상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원측의 경우 미륵삼생과 일생소계를 회통하기 위해 삼생을 대표하는 천의 한 가지를 일생소계로 거론했다면, 이에 비해 신라인법사의 주석은 ‘미륵삼생’ 그 자체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신라인법사의 해석은 『유가론』의 본문에 대한 직접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원측의 해석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의미한 해석들이 분분할 때, 그 해석들 중의 하나를 명료하게 보완해주는 맥락에서 인법사(=국법사)를 인용하는 방식은 다음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8) 金藏本『瑜伽論記』卷9(『宋藏遺珍』5, p.3264中), “新羅因法師解『智論』說彌勒三生言, 人間初生, 天上中生, 還來人間後生, 是爲三也.” 新修本『瑜伽論記』卷11下(『大正藏』42, p.561下)에는 마지막 구절이 “是爲三生”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차이는 없다.

2. 두 번째 인용 : 22근 중 고근(苦根)에 대한 논의

신라인법사의 해석이라고 추정되는 두 번째 인용문은 신수본 『유가론기』에는 ‘신라국법사’의 주석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권수에 대한 금장본의 결락으로 인해 대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수본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유가론』 「섭결택분」의 「오식신상응지·의지」에 대한 주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2근(根)에 대한 다양한 결택 가운데 하나이다. 둔륜에 따르면, 『유가론』의 이 부분은 삼단문(三斷門)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첫째는 22근 가운데 몇 가지가 견소단(見所斷)·수소단(修所斷)·비소단(非所斷)인지를 결택하고, 둘째는 22근 가운데 몇 가지가 견소단 등을 대상[義]으로 삼는가를 결택하는 것이다.¹⁹⁾ 이에 대한 『유가론』의 본문을 먼저 살펴보자.

질문. [22근 중에] ①몇 가지가 견소단이고, ②견소단을 대상으로 삼는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답한다. ①…(중략)… ②이 가운데 유색(有色)의 제근(諸根)은 견소단·수소단을 대상으로 삼고, ㉠무색(無色)의 제근은 3종을 대상으로 삼으니, 견소단·수소단·비소단을 대상으로 삼는다.²⁰⁾

앞서 언급했듯이, 위 인용문은 두 가지 질문(①,②)에 대해 두 가지 대답(①,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락에 대해 둔륜은 비교적 상세한 주석을 붙인 다음 논란이 되는 문구에 대해 ‘景-泰-備-基’ 등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보여준다.

19) 여기서 ‘義’를 대상 혹은 경계로 번역하였다. 이는 『유가론기』 권16(『大正藏』42, p.665中4)에서 22근을 설명함에 있어 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다음의 문구에 의거하였다. “泰와 基가 함께 말하였다. 教와 理를 서로 짝하면 教가 理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理를 義라고 하고, 根과 境을 서로 짝하면 根이 境을 취할 수 있으므로 境을 義라고 한다.(泰基同云, 教理相對, 教能詮理, 理名爲義. 根境相對, 根能取境, 故境名義.)”

20) 『유가론』 권57 「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地」(『大正藏』30, p.616中17-21), “問. 幾見所斷? 見所斷爲義? 如是等答. 十四一分見所斷, 一分修所斷. 十二一分修所斷, 一分非所斷, 謂即十四中六及餘六, 餘二非所斷. 此中有色諸根, 見修所斷爲義. 無色諸根, 三種爲義, 謂見修所斷非所斷義.”

여기에 나오는 논란들은 하나하나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므로, ‘신라국법사 (=인법사)’가 언급되는 주제만 다루고자 한다. 신라국법사의 주석은 위 인용문 중 대답 ②에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논자들의 주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무색의 제근이 3종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고근(苦根)이 무단(無斷 =非所斷)을 반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태사와 기사가 두 가지 풀이를 서술하였다. “①첫째, 만약 따로 설하면 고근은 오직 수소단을 대상으로 삼지만, 총상으로 설했기 때문에 3종을 반연한다고 했다. ②둘째, 자증분에 의거하면 또한 무단을 반연하므로 서로 어긋남이 없다.”

③신라국법사가 말했다. “아라한 등의 고근(苦根)과 상응하는 안식(眼識)이 부처님의 화신이 반열반할 때의 상을 반연하기 때문에 ‘무단을 반연한다.’고 하였다.”²¹⁾

위에서 인용한 『유가론』의 본문에 따르면, 특히 22근의 대상과 관련하여 ‘유색(有色)의 제근(諸根)은 견소단·수소단의 2종을 대상으로 삼고, 무색의 제근은 3종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유색의 제근이란 22근 가운데 ‘안근·이근·비근·설근·신근’의 5근과 ‘남근·여근’의 2근의 총 7가지 근을 가리킨다. 이 7가지를 제외한 의근(意根), 명근(命根), 오수근(五受根=樂·苦·憂·喜·捨), 오근(五根=信·勤·念·定·慧), 그리고 삼무루근(三無漏根=未知當知根·已知根·具知根)의 15가지가 무색(無色)의 근인데, 이 가운데 고근을 문제 삼는 것이다. 고근이란, 오수근 중 하나로 『구사론』 권3(T29, 14c13)에 따르면, ‘몸의 느낌 중에서 손뇌시키는 것(於身受內能損惱者)’으로, 신수(身受)이므로 오식과 상응한다.

21) 『유가론기』 권16上(『大正藏』 42, p.667上16-21), “無色諸根三種爲義者, 如何苦根緣無斷耶? 泰·基述兩解. 一說, 若別說者, 苦根唯以修斷爲境. 總相說故云緣三種. 一說, 據自證分亦緣無斷, 故無相違. 新羅國法師云, 如羅漢等苦根相應眼識, 緣佛化身般涅槃時相故, 言緣無斷.”

그런데 이 문답은 실제로는 둔륜이 규기의 『약찬』의 문구²²⁾에 의거해서 재구성된 것이다. 규기의 『약찬』에는 위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문] ‘무색의 제근이 3종, 곧 견소단·수소단·비소단을 대상으로 한다.’
면, 고근이 무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① 어떤 이는 말한다. ‘이는 많은 경우를 따라 설한 것이다. 무색의 근에서는 또한 고근(苦根)을 제외하니, 고근은 오직 견소단·수소단을 경계로 삼지만, 지금은 많은 경우를 따라 [고근 역시 3종은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하였다.’

② 또 다른 해석. ‘고근(苦根)의 자증분(自證分)에 의거하면 이는 견소단이므로, ‘무단을 반연한다.’고 하였다.²³⁾

『약찬』에 나온 이 인용문의 질문 부분은 앞서 진술된 『유가론기』의 질문과 동일하다. 질문의 요지는 ‘『유가론』에서 무색의 제근 15가지가 견소단·수소단·비소단의 3종을 다 경계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무색 제근 중 하나인) 고근(苦根)이 비소단을 경계로 반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이유는, 아마도 ‘끊어야 할 것이 아닌[非所斷] 경계’가 ‘고통스런 느낌[苦受]’에 의해 수용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약찬』과 『유가론기』의 대답 부분을 살펴보면, 둔륜이 규기의 『약찬』의 내용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약찬』에서 규기는 위의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고근은 실제로는 견소단·수소단의 두 가지만 경계로 삼지만, 고

22) 규기, 『유가사지론약찬』 권15(『大正藏』 43, p.210b17-18), “無色諸根三種見修非斷者, 如何苦根緣無斷耶?”

23) 규기, 『유가사지론약찬』 권15(『大正藏』 43, p.210b17-19), “無色諸根三種見修非斷者, 如何苦根緣無斷耶? 一云, 此從多說. 無色根中, 亦除苦根. 苦根唯見修爲義. 今從多分說. 又解, 約苦根自證分是見斷故, 名緣無斷.”

근이 속하는 오수가 대체적으로 3종을 모두 경계로 삼기 때문에 편의상 고근도 3종을 경계로 삼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고근을 상분-견분-자증분의 구도에서 논할 경우 ‘고근은 비소단(=무단)을 반연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음에 둔륜의 『유가론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해석이 약간 다르게 진술되기는 했지만,²⁴⁾ 『약찬』에 나온 그 두 가지 해석은 규기뿐만 아니라 신태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둔륜은 태사와 기사의 해석을 같이 묶어서 제시하였다. 그런데 최후로 진술된 신라국법사(=인법사)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이전의 두 가지 해석 중의 두 번째 해석, 즉 ‘고근은 무단(無斷=非所斷)을 반연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예시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라한 등이 고근(苦根)에 상응하는 안식(眼識)으로 부처님의 화신이 반열반할 때의 상을 반연하는 것’이다. 즉 ‘아라한이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부처님의 반열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때’가 바로 고근이 무단을 반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화신이 반열반할 때의 상(相)이 경계가 될 경우, 이 상은 견소단·수소단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단 곧 비소단이므로, 이 경우가 ‘고근이 무단을 경계로 삼는 구체적인 경우’라는 것이 국법사의 견해이다.

22근이 견소단·수소단·비소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대비바사론』, 『순정리론』 등 유부 계통의 논서에서도 확인되지만, 22근이 ‘견소단·수소단·비소단 중 어떤 것을 경계[義]로 삼는가.’라는 문제는 오직 『유가론』에서만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이에 대해 『유가론』 한역에 참여했던 신태, 그리고 『약찬』을 썼던 규기가 동일한 회통의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을 먼저 확

24) 『유가론기』에서는 “고근이 오직 수소단을 경계로 삼는다.[苦根唯以修斷爲境]”고 한 반면, 『약찬』에는 “고근은 오직 견소단·수소단을 경계로 삼는다.[苦根唯見修爲義]”고 하였다. 내용으로 보면 『약찬』의 내용이 정확하다.

25) 이와 유사한 논의는 『대비바사론』에서 22근에 대해 유연(有緣)과 무연(無緣)을 반연하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인식대상인 소연연(所緣緣)과 관련된 논의이므로 『유가론』과는 논의의 맥락이 조금 다르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46(『大正藏』 27, p.747中15).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유가론』 주석서를 저술했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눈여겨 볼 것은, 이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인법사를 인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의 하나를 좀 더 명료하게 보완해주는 맥락에서 국법사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점이다. 또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가론』 본문에 대한 직접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완적 견해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그가 『유가론』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위의 문답은 『유가론』 및 당시 주석가들에 의해 다루어진 매우 세부적이고 난해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수본에 나오는 신라국법사가 신역 『유가론』의 매우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매우 정통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추정해볼 수는 있다.

3. 세 번째 인용 : 최후유(最後有) 보살의 정(定)과 계(戒)의 선후관계

여기서 소개할 세 번째 인용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유가론기』의 2본에서 그것을 설한 법사의 이름을 국법사와 인법사로 각기 다르게 표기한 경우이다. 우선 『유가론』의 본문은 권91에 해당하는 「섭사분」 ‘계경사처택섭(契經事處擇攝)’에 나오는 아래의 내용이다.

또 그[최후유 보살]는 출가하지 않았을 때 섬부(瞻部)의 그늘 속에서 홀로 앉아 사유하여 곧장 최초의 정려에 증입하고, 후에 자신과 남이 늙고 병들고 죽는 법에 대해 바르고 자세히 관찰하여 결정적으로 인가(忍可)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체찰법인(諦察法忍)이 내면에서 스스로 현전함’이라고 한다. 또 그가 속세에 익힌 선근이 일체의 선한 행위에 의해 각 발(覺發)되고, 또 용맹한 체찰법인의 증상된 힘으로 인해 곧장 광대하고 묘한 욕망을 버리고 청정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비록 바른 범행(梵行=청정한 행)을 시설해준 적이 없다 해도 저절로 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이 금계를 의지하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출리할 수 있음(能正出離)’이라고 한다...²⁶⁾

위 인용의 전후 맥락은 ‘최후유에 머무는 보살[住最後有菩薩]’의 정행의 도 [正行道] 및 도과(道果)를 8가지 상(相)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인용문에서는 8가지 상 가운데 셋째 체찰법인(諦察法忍), 넷째 출리(出離)의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먼저 ‘최후유에 머무는 보살’은 앞의 첫 번째 인용에서 다루었던 ‘일생소계 보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가론』에서는 이를 ‘이번 생에 머물면서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왜냐하면 『유가론기』의 2본 모두 ‘신라인법사’로 명기했던 첫 번째 인용에서 보살의 ‘일생소계’와 ‘최후유’를 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일생소계의 사례로 제시된 미륵의 삼생설에 대한 인법사의 주석을 제시했는데, 이 세 번째 인용에 이르러 다시 ‘최후유’에 대한 주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용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세 번째 인용문의 법사는 신수본의 국법사가 아니라 금장본의 인법사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라인법사의 주석 내용을 살펴보자. 『유가론기』에서는 위의 인용문 중 ‘섬부’에 대한 ‘경사등(景師等)’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한 뒤²⁷⁾, ‘인법사’의 주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신라인법사(혹은 신라국법사)가 말했다. “이 글을 통해 ‘보살은 출가하지 이전에 초정려를 얻고 출가한 이후에 저절로 계를 얻으며 나아가 비상비상처정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먼저 정을 얻고 후에 계를 얻는 것이다.”²⁸⁾

26) 『유가론』 권91 「攝事分中契經事處擇攝」(『大正藏』 30, p.820上1-8), “即於未出家位, 居瞻部影, 獨坐思惟, 便能證入最初靜慮。後於自他老病死法, 正審觀察, 能定忍可。如是名為諦察法忍內自現前。又彼宿世所習善根, 一切善行之所覺發, 復由勇悍諦察法忍增上力故, 便能棄捨廣大妙欲, 淨信出家。雖無施設正梵行者而能自然受持禁戒。由此禁戒爲依止故, 漸次能證乃至非想非非想處。如是名為能正出離。…”

27) 금장본 『유가론기』(宋藏遺珍 5, p.3486中), “景師等云, 西國多有瞻部之樹陰厚。比丘多住彼樹影中坐禪。非是近須彌山閻浮提樹名瞻部。” 신수본은 권23(『大正藏』 42, p.843中9-14), “景師等云, 西國多有瞻部之樹陰厚。比丘多住彼樹影中坐。非是近須彌山閻浮提樹名瞻部樹。” 2본은 내용상 차이는 없고, 밑줄 친 글자의 차이가 있다. 즉 ‘厚’와 ‘原’, ‘禪’과 ‘故’의 두 군데이다. 둘 다 金藏本이 적절하다. 여기서 섬부는 그들이 우거진 서역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지, 남섬부주에 가까이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28) 金藏本 『유가론기』(『宋藏遺珍』 5, p.3485中), “新羅因法師云, 以此文知, 菩薩於未出家已前得初靜慮, 出

이 견해는 『유가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가론』의 문장에 의거하여 ‘최후유 보살이 정을 먼저 얻은 후 계를 얻는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데 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부분에 나온 인법사의 견해 역시 앞의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가론』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고, 최후유 보살의 정과 계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유가론』의 문장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선후 관계를 확정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둔륜은 이를 인용하여 『유가론』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 같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유가론기』 2종 판본에 나오는 신라인법사와 신라국법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두 법사에 대해서는 그간 주로 신수본 『유가론기』에 의거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인물로 간주한 뒤 각각에 대한 기초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장본에 의거할 때, ‘국’법사가 ‘인’법사의 오기일 가능성, 그리고 2인이 실제로는 인법사 1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두 법사가 한 사람일 경우 『유가론기』에 등장하는 “新羅○法師” 8인은 7인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정 아래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유가론기』에 총 3회 나오는 이들 2인의 인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의 연구와 목록 등을 살펴볼 경우, 현재로서는 신라국법사로 명명되는 인물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인법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를 영인(令因)·운인(雲因)·영인(靈因)·지인(智因) 등으로 추정하였지만,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신라 현일의 『무량수경기』에

家已後自然得戒, 乃至證非想定. 卽先得定, 後得戒也.” 신수본은 권23(『大正藏』 42, p.843中9-14). 2본의 글자 교감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因’과 ‘於’와 두 글자이다. 이 중 ‘於’는 금장본이 『유가론』 본문에 부합한다.

‘인법사’가 5회 인용되어 있고, 또한 일본의 『성유식론본문초』에 ‘신라인법사’가 1회 인용되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유가론기』에 나오는 인법사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르면, 인법사는 『무량수경』의 주석서가 있었고, 『유가론』의 세부적이고 난해한 주제에 대해서도 매우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유식론』의 연구와도 어느 정도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가론기』에 나오는 이들의 인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론기』에 3회 등장하는 이 법사의 주석은 『유가론』 본문에 대한 직접적 주석이라기보다는 논쟁되는 주제에 대한 참고할만한 해석으로 인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에 나온 인법사의 주석은 원측의 해석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료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맡았고, 두 번째 나온 국법사의 주석은 규기의 견해를 보완해주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준 것이었고, 세 번째 나온 인법사(혹은 국법사)의 견해는 『유가론』의 문장을 통해 특정 주제, 곧 최후유에 머무는 보살의 정과 계의 선후관계를 확정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세 가지 주석 모두 『유가론』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본 『유가론기』 모두 ‘신라인법사’로 명기된 첫 번째 부분의 주석이 보살의 두 종류인 ‘일생소계(一生所繫)’와 ‘주최후유(住最後有)’ 가운데 일생소계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미륵의 삼생설을 언급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부분의 주제가 ‘최후유에 머무는 보살’의 정과 계의 선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따르면, 이 둘은 분명히 내용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제기한 인물로는 신수본의 ‘국법사’가 아니라 금장본의 ‘인법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셋째, 단론이 인법사의 주석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기존의 『유가론』의 주석서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식학자들의 다양한 저술 가운데서 『유가론』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모두 참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론

의 인용 방식과 인용된 주석 내용을 고려해보면, 인법사는 원측, 규기보다는 후대에 활동했고, 논문이 『유가론기』를 작성하던 705년 이전에 여러 저술을 남긴 신라 출신 유식학자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遁倫(道倫), 『瑜伽論記』(『宋藏遺珍』第5卷; 『大正藏』42)
- 五百大阿羅漢等造, 『阿毘達磨大毘婆沙論』(『大正藏』27)
- 彌勒菩薩說, 『瑜伽師地論』(『大正藏』30)
- 圓測, 『解深密經疏』(『卍新纂續藏經』21)
- 窺基, 『瑜伽師地論略纂』(『大正藏』43)
- 永超, 『東域傳燈目錄』(『大正藏』55)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大正藏』55)
- 未詳, 『成唯識論本文抄』(『大正藏』65)
- 玄一, 『無量壽經記』(『卍新纂續藏經』22)
- 智周, 『法華玄贊攝釋』(『卍新纂續藏經』34)
- 詮曉, 『上生經疏會古通今新抄』(『宋藏遺珍』6)

2. 단행본류

-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 佛書解說大辭典編纂會編, 『佛書解說大辭典』, 東京: 大同出版社, 1968.
- 백진순, 『해심밀경소 제1서품』, 서울: 동국대출판부, 2013.

3. 논문류

- 江田俊雄, 「新羅의 遁倫과 『倫記』所引의 唐代諸家」, 『宗教研究』新11卷3號, 1934.
- 塚本善隆, 「金刻大藏經の發見とその刊行」, 『日華佛教研究會年報』v.1, 1936.
- 勝又俊教, 「『瑜伽論記』に關する二三の問題」, 『佛教研究』, 1938.
- 박인석, 「『유가론기(瑜伽論記)』의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思想史學』50, 韓國思想史學會, 2015.
- 백진순, 「『유가론기(瑜伽論記)』에 나타난 신라현법사(新羅玄法師)에 대한 연구: 「섭결택분」의 성문지·보살지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52, 불교학연구회, 2017

Study of Shillainbeopsa (新羅因法師) and Shillagukbeopsa (新羅國法師) of *Yugaron-gi* (瑜伽論記)

Park, Inn-Suk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Among the two different prints of *Yugaron-gi* (瑜伽論記 Commentaries on the *Yogacārabhūmi-śāstra*), the print included in the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新修大藏經), shows total of 8 Buddhist scholars referred as “Shilla○beopsa (新羅○法師)” but the print included in *Jin Tripitaka* (金藏) excludes the “Gukbeopsa (國法師)” from the 8 scholars, making it total of 7. When comparing the two prints, this confusion comes from Shillainbeopsa (新羅因法師) and Shillagukbeopsa (新羅國法師). They are quoted 3 times in total, which is not frequent, but they are critical evidence in identifying the identities of unsung Buddhist scholars of Shilla. In research from existing studies, Gukbeopsa is not found among Buddhist scholars from Shilla, and even in the *Jin Tripitakabon* print.

With the assumption that one scholar is quoted as both Gukbeopsa and Inbeopsa in the two prints of *Yugaron-gi*, this study reviewed the 3 annotates a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ll 3 annotates made from *Yugaron-gi* are not direct annotates of the paragraphs of *Yogacārabhūmi-śāstra* (瑜伽師地論) but are quoted as interpretations which supports the agenda being discussed. Second, annotates on the two kinds of Bodhisattvas, Bodhisattva bound to a single life (一生所繫) and Bodhisattva in his final lifetime (住最後有), which are discussed in the *Yugaron-gi*, are identical,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cholar who presented them is not Gukbeopsa from the *Taishō shinshū daizōkyō*, but is Inbeopsa from the *Jin*

Tripitaka. Third, considering how Dunryun (遁倫) quotes and annotates Inbeopsa, it appears that he has referred to various statements from the annotates of *Yogācārabhūmi-śāstra* as well as from records related to *Yogācārabhūmi-śāstra*.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eriod of Inbeopsa, he was an active scholar during the Shilla period, who had been engaged in writings during the period later than Woncheok (圓測) and Kuiji (窺基), and had written records prior to year 705 when Dunryun wrote *Yugaron-gi*.

Keywords

Dunryun (遁倫 or 道倫), *Yugaron-gi* (瑜伽論記), Jin Tripitaka (金藏), Shillainbeopsa (新羅因法師), Shillabukbeopsa (新羅國法師)

2018년 08월 03일 투고
2018년 09월 13일 심사완료
2018년 09월 15일 게재확정

